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5 년 1 월 27 일

청 원 인

성 명 : 박우민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구효주 (인) 외

5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박우민	
건명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소개년월일	2015년 1월 27일	
<p>소개의견</p> <p>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청소년국회의원입니다. 2015년 1월에 개최된 제 17대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전 중 의결된 안전은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과 식품 안전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은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급식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감염은 계속 발생하고 그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많은 원인 중 가장 과급력이 크고 그 대상이 광범위한 것은 학교 급식을 납품하기 이전 식재료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체제가 도입되지 않아 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납품 이전 식재료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소홀 해결을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p>		
현행	제정문	
<p>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③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5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업체에게 3단계에 걸친 징계를 실시한다.</p>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만약 한 학교 전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식중독에 걸린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학교 급식을 의심할 것입니다.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은 건강의 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의 경우 급식비로 지출한 부분과 치료비에 있어서 이중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차별, 체벌, 왕따 등의 물리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급식의 영양기준 미달, 식자재 관리 소홀, 위생청결 불량 등의 급식문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식중독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1,648명 의 환자수가 나왔고, 2012년 2,851명의 환자수가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2013년 2,16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9월까지)의 경우 3,624명으로 한 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대폭 늘어난 추세를 보였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지만, 외부 납품업체의 납품 이전 식재료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소홀은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천뉴스-프레시안 학교 식중독원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학교 급식계약의 책임자는 각 학교 학교장들이라 시교육청에서 강제로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다. 조달청이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에서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지만 이중, 삼중, 등록업체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aT관계자는 “한 곳의 업체에서 두 곳의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즉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를 일제히 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한 식사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주요골자

식품 위생법의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시설기준은 악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학교 급식 납품 이전 식재료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소홀 해결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추가한다.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5차례(각 분기당 1회 실시하되 2분기는 1회를 추가) 감사를 실시한다. 나아가 감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3단계에 걸친 징계를 받으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구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	제정문
<p>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p> <p>③ <u>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5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 업체에게 3단계에 걸친 징계를 실시한다.</u></p>

청원인 성명 : 박우민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